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0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비엔케이투자증권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㈜비엔케이투자증권 : 과태료 1,000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가.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

3. 조치사유

가.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㈜비엔케이투자증권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9인은 2022.7.1.~2023.5.30. 기간중 랩·신탁 증권사의 위법한 거래*를 감추어 주기 위해,

* '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·신탁재산 간 연계거래' 등으로 하나증권㈜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(2025.3.31.)되어 위법거래에 해당

○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(KOFR금리 이하)로 채권 교체거래, 유동화사채 발행, 파킹거래를 지속적·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3,510건(16조 9,634억원)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, 제390조, <별표 22>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<별표 3>